

제 7 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 7.1 조

공 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질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 그러한 질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3.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 이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 7.2 조

상품의 반출

1. 양자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 가.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게 하는 절차
 - 나.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하는 절차
 -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

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적용가능한 관세·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 세관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¹⁾

제 7.3 조 자 동 화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가. 전자시스템이 세관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나.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다. 국제무역데이터의 양자간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시스템과 호환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세계관세기구의 관세데이터모델과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제 7.4 조 위험관리

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이 검사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평가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 7.5 조 협 력

1. 이 협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1) 당사국은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자국 세관당국이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조세 및 수수료의
지급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담보·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정정책의 중요한 수정이나 수입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관련된 그 밖의 유사한 진행사항에 대한 사전통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각 당사국의 법 및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는 데 협력한다.

- 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특혜관세대우 신청절차 및 검증절차를 포함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규율하는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 및 운영
- 나. 관세평가협정의 이행 및 운영
- 다.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관세 사안

3. 당사국이 수입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수집된 특정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당사국의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그 정보를 요청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정보를 찾아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특정하여 요청하는 정보를 적시한다.

5. 정보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자국 법과 자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 협정에 따라 그 정보를 담은 서면 답신을 제공한다.

6. 제3항의 목적상, **불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공적 또는 사적인 출처로부터 획득한 관련 사실정보를 기초로 한 의심을 말하며, 그 사실 정보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 가.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을 규율하는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전력
- 나. 제조자, 생산자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상품 이동에 관여한 그 밖의 인이 수입을 규율하는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전력
- 다. 특정 제품 분야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상품의 이동에 관여한 일부 또는 모든 인이 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전력, 또는
라. 정보의 요청 당사국과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특정한 요청의 맥락에서 충분하다고 합의하는 그 밖의 정보

7.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의 수입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수출품이 수입을 규율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 특히 밀수 및 유사한 위반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관련된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다른 쪽 당사국이 판정하는 데 도움을 줄 그 밖의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8. 양자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위험관리 기법을 개선하고, 국제공급망표준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며, 상품의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통관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고하며, 직원의 기술 숙련을 향상시키고, 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의 사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 및 지원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9. 양 당사국은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관세분석 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노력한다.

10. 양 당사국은 수입을 규율하는 각 당사국의 규정 집행 능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데 도움이 될 접촉선의 설치를 포함한 의사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유지하며 수입 문제에 대한 양자간 조정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 7.6 조

비밀유지

1.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다른 쪽 당사국이 정보 요청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고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한 인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2.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접수한 당사국은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항에 합치되게 행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당사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공개되면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관세법 행정에 따라 제출된 비밀 정보를 무단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 7.7 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을 위하여 별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규정한다.

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다.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

라.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마.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가 제출된 후 4시간 이내에 특송화물이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바. 특송화물의 중량 또는 관세가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사.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²⁾

2) 사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 화물운송장이나 그 밖의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제 7.8 조 재심 및 불복청구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가. 그 결정을 내린 직원 또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행정적 재심³⁾, 그리고
-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당사국이 그 정보를 제7.6조제4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7.9 조 벌 칙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국가 및 특혜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것을 포함한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 그리고 적절한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 7.10 조 사전심사결정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⁴⁾,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수입제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경우, 가호에 따른 행정적 재심은 대한민국 국세심판원의 심판을 포함할 수 있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사전 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전에 자국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한다.

가. 품목분류

나.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다. 관세환급, 납기 연장 또는 그 밖의 관세감면의 적용

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마.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바. 원산지국가 표시

사. 상품이 쿼터나 관세율할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이 요청을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정을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은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신청하는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할 때, 그 당사국은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3.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결정이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로부터 사전심사결정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4. 발급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사전심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발급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이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에 기초하였던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심사결정을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사전심사결정의 행정적 재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6. 자국 법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전심사결정을,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7. 신청인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전심사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또는 상황을 누락하는 경우 또는 사전심사결정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민사·형사 및 행정적 조치, 금전상의 벌칙, 또는 그 밖의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